

진실에 입각한 것으로서 선의로 쓰여졌기에,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 명예훼손이나 왜곡보도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POPE v. THE CHRONICLE PUBLISHING CO. 23 Med. L. Rptr. 2197

(미연방중부일리노이지방법원, No.93-1174, 1995년 4월)

사건개요

1. 이 사건 원고인 Pope는 1991년 10월 러시아에서의 경제, 투자, 무역, 관광 그리고 교육발전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원고인 Serendipity 회사를 설립하였다. 1992년 1월 9일 원고들은 러시아의 Vladimir 시와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미국식 집」이라고 불리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Vladimir 시에 American House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되,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Vladimir 시는 대지와 중장비, 미국에서 온 건축관계자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Serendipity는 자재와 건축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Serendipity는 이 집이 Vladimir 시민에 대한 선물이며 그 사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러시아 건축종사자들에게 미국식 건축기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였다.

2. 그러나 곧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Vladimir 시의 공무원은 1992년 2월 시가 합작투자계약에서 약속한 재정부담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사정을 알림과 동시에 미국측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Pope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청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이 계획을 원래의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외국 관광객이나 사업상 방문자들이 Vladimir 시가 더 이상 방문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Vladimir 시는 자신의 시 경영문제에 대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상호간의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그 후 몇 차례의 매끄럽지 못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다가 Vladimir 시는 마침내 Pope에게 미국식 건축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러시아 수습기사들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이쯤 되자 현지 신문인 Vladimirske Veolomosti는 1992년 3월 18일과 4월 15일자 판에서 문제의 합작투자계획의 진척상황을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계획이 과연 Vladimir 시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기사의 전반적인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 후 Serendipity와 Vladimir 시는 다시 만나 당초 Vladimir 시가 약속한 재정부담을 Serendipity가 대신 지는 대신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건축물은 7월경 완공되어 Serendipity는 2003년 1월까지 신축건물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4. 1992. 7. 5. 피고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인 Pentagraph 지는 『Vladimir 지역신문이 Pope의 계약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 기사는 합작투자계획은 양국간 문화적 차이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면서 현지 언론의 보도내용을 요약하였다. 1992년 7월 1일 Pentagraph 지는 다시 『추한 미국인으로 비치는 것을 삼가자』는 제하의 사설에서 합작투자계획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당초 내세운 합작투자계획의 그럴듯한 목적이 배후에 숨어 있는 상업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흐려지고 있으며, Pope가 Vladimir시 당국에 대하여 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올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추한 미국인」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 이 라고 하면서, 양국간 관계를 선해나가야지, 반대로 의구심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5. 그러자 원고들은 Pentagraph지의 1992년 7월 5일자 기사와 7월 14일자 사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고 더 이상 다룰만한 쟁점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구하였다.

판결요지

1. 원고들이 계획하여 추진하는 러시아에서의 합작투자계획에 대한 신문 사설은 그 자체로써 명예훼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설에서 언급한 내용 중, 원고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려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관한 혼동이 있었으나 이는 잘 모르고 선의로 한 것이며, 원고들의 상업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 속에 섞여 있었다는 점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명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들의 Vladimir시 당국에 허한 경고가 추한 미국인이 한 말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의견표시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러시아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획에 관한 신문기사도 역시 그 자체 명예훼손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원고들이 일부 상업적 의도와 함께 인도적 원조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고, 원고들이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오도하였다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모르고 언급한 부분일 수 있으며, 원고 Pope가 자신을 탐스러운 과일바구니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아이디어는 항상 비용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명예훼손의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3. 그러고 원고 Pope 개인이나 그가 설립한 Serendipity 회사가 러시아에서의 합작투자계획을 수행해나가는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설이나 기사는 왜곡보도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 공격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들 스스로가 그 사업 계획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설이나 기사 내용만으로 심각하게 감정을 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이유(요약)

1. 명예훼손 여부 판단

가. 일리노이주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발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정도로 그 평판에 해를 가하는 것이면 이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손해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고도 명예훼손소송을 유지하려면 어떤 사람이 ①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② 혐오스러운 전염병에 걸렸다는 내용 ③ 공직이나 사적 고용관계상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내용 ④ 종사하는 직업, 관련된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야기시키는 내용, 그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등 그 자체로써 명예훼손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의 경우에도 그것이 ① 문맥상, 그리고 사용된 용어와 그 함축된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스런 의미해석을 할 때 선의의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② 경미한 부분에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 경우 ③ 의견표명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 발언이 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은 미 연방헌법 수정 1 조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 이러한 법원칙을 근거로 살피면 먼저 1992년 7월 14일자 사설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설내용 중 원고들이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하려 하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설에서의 언급이 마치 원고들이 비용에 대한 정보를 오도하고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원고들이 준 비용에 관한 정보가 Vladimir 시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업적 의도를 함께 가졌다는 점도 사실이고, 양국간 관계를 개선해나가야지, 딴 데로 의구심을 자아내서는 안된다는 것도 지당한 언급이며 실제로 원고들은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지도록 행동했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사설은 전체적으로 보나 부분적으로 떼어 보나 그 자체로써 명예훼손을 구성할 만한 정도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의 1992년 7월 5일자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인도적 원조의 목적에서 추진한 것처럼 허위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그러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실에 입각한 기사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와 함께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인도적 목적 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상업적 의도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Pope가 자신을 탐스러운 과일바구니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거나, 원고들의 아이디어는 항상 비용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 내용 자체로 보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2. 왜곡보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Pope는 앞서 주장한 명예훼손사실이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보도라고 주장한다. 왜곡보도를 이유로 한 불법 행위소송을 유지하려면, ①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대중의 눈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비쳐지며 ② 그러한 왜곡의 정도가 평균인의 입장에서 감내하기에 어려운 정도로 공격적인 것이며 ③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그러한 보도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기사와 사실은 기사 그것이 대중의 원고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인의 입장에서 감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도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자신의 사업관계보도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한 원고 Pope의 감정을 상하게 한 일부 왜곡보도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이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악식판결신청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짓는다.